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996. 6. 10

행정재무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3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3월 28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보류

제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재상정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일부 미흡한 관련 규정을 현실의 흐름에 맞도록 보완하여 조문간 구조조정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관계기관·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전문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안 제3조)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주요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이 되는 구청 국장급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위촉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개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고, 간사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원만한 회의 진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작업반을 편성,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의 도래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한 시점에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작업반의 편성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목뿐이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7조 규정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법정사항이기도 하며, 동 조례(안)의 내용인 위원회의 설치·운영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적어서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審査結果 :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52 |
|----------|----|

제출년월일 : 1996. 3. 2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일부 미흡한 관련규정을 현실의 흐름에 맞도록 보완하여 조문간 구조조정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관계기관·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전문을 개정하므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 (안 제3조)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근거마련 (안 제7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 합의사항 : 없음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개정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 관련 전문가(2~4인), 구의원(4~5인)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원중 구의원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⑥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작업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자료 및 의견제출)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